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직·공상소방공무원 등을 “군경” 과 분리하여 명시〉

■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7, 2201953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 검토의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명칭 변경 등	4
※ 참고자료	32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3인
- 2) 제안일 : 2024. 7. 18.
- 3) 회부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 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 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

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3인
- 2) 제안일 : 2024. 7. 18.
- 3) 회부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

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등).

II. 검토의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명칭 변경 등

- 2건의 개정안¹⁾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에서 “군경”과 분리하여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등으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u>재해사망군경</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 ----- ----- ----- ----- ----- -. 1.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u> ----- ----- ----- ----- -----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3호).

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

2.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

3.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 ①

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 ⑤ (생략)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8조(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

1.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

3.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양가족수당) ① -----

-----.

1.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판정된 사람	----- --
2. <u>재해사망군경</u> 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u>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u> ----- -----
3. <u>재해사망군경</u> 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3. <u>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u>재해 부상군경</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u>재해 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1.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	1. <u>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u> -----
2.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2. <u>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u> -----

3. (생 략)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4.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1.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생 략)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48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3.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

제48조(직업훈련) ①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
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
방공무원-----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⑦ (생략)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

-----.

-----.

1. -----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소방공무원-----
--

2.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원-----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 ----- ----- ----- -----.
② (생 략)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u>재해부상군경</u>, 재해부상공무원 2. 3. (생 략) ② (생 략)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 2.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 ----- ----- ----- -----. 1.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대부 대상자) ----- -----. 1.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u>----- 2.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u>----- --- 3.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4. (생략) 5. <u>순직군경(殉職軍警)</u> : 군인이거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u>공상군경(公傷軍警)</u> : 군인이거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순직군경(殉職軍警)·순직소방공무원</u> ----- ----- ----- ----- ----- ----- 6. <u>공상군경(公傷軍警)·공상소방공무원</u> ----- ----- ----- ----- ----- -----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8.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② (생략)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

-----.

1. -----공상군경 · 공상소방공무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생략)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공상군경 · 공상소
방공무원-----

제12조(보상금) ① -----

1. -----공상군경 · 공상소
방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순직군경 · 순직소
방공무원-----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간호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간호수당) ① -----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

-----.

1.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2. 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4·19혁명사망자--

배우자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
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
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
에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
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
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
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
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

3. 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소
방공무원, 4·19혁명사망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
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당) ① -----
-----순직군
경·순직소방공무원-----

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

1. (현행과 같음)

2. -----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1.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생략)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대

② (생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략)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생략)

2. -----순직군경·순직소상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순직군경·순직소상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공상군경·공상소상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생략)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1. -----공상군경 · 공상소
방공무원-----

2. -----순직군경 · 순직소
방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순직군경 · 순직소
방공무원-----

5. -----공상군경 · 공상소
방공무원-----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제42조(진료) ① -----공상
군경·공상소방공무원-----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하
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
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상균경 · 공상
소방공무원-----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생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

----공상군경 · 공상소방공무원

---.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

-----공상군

경 · 공상소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

-----공상

군경 · 공상소방공무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
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
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
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
별공로상이자

2. (생략)

② (생략)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
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 -----

-----.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

1. -----공상군경·공상소
방공무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u>공상군경</u>에 준하여 보상한다. 1. 2. (생략)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u>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u> 또는 <u>공상군경</u>으로 보고 보상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u>공상군경</u>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 -----<u>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u>-----. 1. 2. (현행과 같음)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 ----- ----- -----<u>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u> 또는 <u>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u>----- ----- -----.
---	--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²⁾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하고 있음.³⁾

[표 1]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훈 제도

구분	해당 직무	적용 법률	예우 수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등	국가유공자법	군경과 동일 예우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일반행정업무 등	보훈보상자법	

-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3) 「보훈보상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이에 대하여, “군경”은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별개의 법률(「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보존 관계법령이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순직군경” 등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순직소방공무원 등을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등과 같이 분리하여 병기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을 보존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명예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긍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보존 관계법령의 연혁 및 기본 체계, 소방공무원의 보존 제도와 관련된 개정 경과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유공자법」은 “군경” 유형에 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던 舊「군사원호보상법」 등과 “공무원” 등의 유형에 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던 舊「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통합하여 제정(1984. 8. 2.)된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군경”을 “공무원”과 구분하여 정하고 있던 체계가 현행까지 정착된 것임.⁴⁾
- 둘째,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공무원이 직무수

4)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은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1980. 10. 27. 신설되면서 이러한 보존 관련 법률의 연혁과 기본 체계가 반영된 것임.

행 중 사망 또는 상이로 인하여 보훈대상자가 되는 유형을 “군경”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 예우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⁵⁾ 현행 보훈 제도에서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단순히 신분이나 직역의 표현뿐만 아니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예우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험한 직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경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끔, 「국가유공자법」은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 유형 중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정원 직원, 교도관 등과 같이 공무원 중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⁶⁾ 또는 개별 법률⁷⁾에서 순직군경 또는 공

5) 이러한 구분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서 그 보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서도, 군인·경찰과 같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임.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2. (생략)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상군경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을 “순직·공상 군경” 유형에 포함하여 예우하고 있음.

[표 2] 보훈대상 유형에 따른 구분

구 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예우 수준
군 경	전몰·전상, 순직·공상	재해사망·재해부상	보훈급여금 지급
공무원	순직·공상	재해사망·재해부상	보훈급여금 미지급*
그 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특별공로 관련자	-	

* 단,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지급

- 셋째, 소방공무원은 2011년 6월 30일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위 개정 당시의 개정안도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11. (생략)

제59조(보훈 등 예우)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병역법」 제75조 등 개별 법률에서 대상자의 보훈 또는 보상에 관하여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의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순직·공상군경”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⁸⁾

□ 그 밖에, “순직군경” 등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 등록 인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순직·공상 군경”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보훈대상자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표 3]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

(’24. 8. 기준)

보훈대상	대상구분	계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15,020	-	15,020
	소방공무원 (순직군경 대비)	178 (1.2%)	-	178
	공상군경	67,421	49,068	18,353
	소방공무원 (공상군경 대비)	206 (0.3%)	170	36
	순직공무원	8,633	-	8,633
	공상공무원	5,978	3,239	2,739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사망군경	1,507	-	1,507
	소방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대비)	38 (2.5%)	-	38
	재해부상군경	6,542	5,985	557
	소방공무원 (재해부상군경 대비)	34 (0.5%)	29	5
	재해사망공무원	264	-	264
	재해부상공무원	229	210	19

자료: 국가보훈부

8) 당시 2건의 개정안[이재선의원안(의안번호 제1805273호), 이인기의원안(의안번호 제1808163호)]은 “소방공무원”을 “공상 군인·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같이 병기하는 방식이었음.

9) [참고]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p.33)

□ 국가보훈부는 현행 보훈법령에서 “군경”은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정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높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

대상별 출신지	합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유족	본인	유족	유족	본인	유족
합계	272,528	35,277	55,716	99,142	15,232	49,297	17,864
육군	222,800	23,405	46,631	87,675	10,508	39,444	15,137
해군	12,332	523	3,318	3,377	943	3,105	1,066
공군	3,026	34	116	95	723	1,618	440
해병대	8,812	87	4,942	3,266	20	388	109
사회복무요원	110				25	77	8
군무원	599	216	45	270	22	34	12
예비군	292	20	6	7	138	78	43
노무자	2,436	1,767	24	541	61	4	39
종군기자	17	3	5	8	1		
애국단원	2,64	2,194	10	228	24	1	7
유격대	170	30	32	97		5	6
청년단원	1,398	1,243	4	135	16		
향토방위대원	322	248	3	61	8	1	1
의용소방대원	91	82		9			
학도병	53	2	11	36	2	1	1
제9965부대	1,516	111	65	48	3	1,147	142
경찰	11,357	4,896	127	2,684	2,127	900	623
민방위	117	31		42	26	6	12
전경(의경)	2,463	27	11	45	310	1,964	106
소방공무원	439	62	1	7	173	162	34
의무소방원	20	1			2	17	
해양경찰	15			1	4	10	
보안유공	40	11	3	8	9	1	8
경비교도대	104	2		2	17	77	6
제5163부대	17	5	2	1	1	6	2
공무원	98	5	12	21	34	19	7
청와대경호실	14			1	5	8	
철도공무원	21	4	6	5		3	3
기타등	1,385	268	342	472	30	221	52

출처: 보훈연감(2023)